검 토 보 고 서

■ 조 례 명

ㅇ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ㅇ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기능쇠퇴·유사중복 기구를 통폐합하여 작으면서도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ㅇ 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기능쇠퇴, 유사중복 기구를 통·폐합 현행 '15개 실과'를 '11개 실과'로 하면서 기구의 기능에 맞게 기구의 명칭변경

- 폐지(△1) : 민방위 재난관리과
- 통·폐합(△3)
  · 민원봉사실 + 지 적 과 ⇒ 민원봉사과
  · 농업정책과 + 산 업 과 ⇒ 농 산 과
  · 도시주택과 + 지역경제과 ⇒ 도시경제과
- 명칭변경(3)
  · 문화공보실 ⇒ 문화관광과
  · 내 무 과 ⇒ 총 무 과
  · 환경보호과 ⇒ 환 경 과

ㅇ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3개 사업소 폐지

-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 화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 화순군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
-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 화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 화순군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화순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를 둔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의 기획,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군정시책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업무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 집행 및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7.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
8. 투자의 심사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10. 군 감사행정에 관한 사항
11. 주요시책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2. 목표관리제 업무에 관한 사항
13. 공약사항 처리분석에 관한 사항
14. 군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조례.규칙의 심사등 자치법규 관리
16. 쟁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7. 공보 계획에 관한 사항
18. 언론보도등 언론에 관한 사항

19. 국.도.군정 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총무과)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 및 보완,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
2. 문서 수발.통제 및 보존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4. 통계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6. 직제.정원.인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교양 및 복리에 관한 사항
8.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10. 여론 및 전문보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국민운동 시책에 관한 사항
13.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군민의식교육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및 민방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몽에 관한 사항
19.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20.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21. 전산, 통신,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2. 전산, 통신, 보완에 관한 사항
23.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 전산 교육에 관한 사항
25.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6. 그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군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 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4.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각종 물품의 구입 계약에 관한 사항
6. 국.공유 재산의 취득, 매각,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8.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조사에 관한 사항
9. 군 금고 및 공채.국채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실 운영 및 민원상담실에 관한 사항
2. 민원사무 창구 즉결처리에 관한 사항
3. 민원 1회 방문 처리 종합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업에 관한 사항
5. 차량.중기 등록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토지관리 및 취득에 관한 사항
8. 지적민원 처리 및 지적공부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지분할 허가 및 이동지 검사 정리에 관한 사항
10.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
11.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및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및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13.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5. 지가의 결정.공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6. 토지 개념에 관한 사항

17.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건축일반에 관한 사항
19.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주택개량등 주거환경 및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1. 병무행정 및 공익근무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출판.향교.사찰에 관한 사항
7. 예술.문화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8. 군사 및 마을유래지 등 편찬에 관한 사항
9. 온천지구 종합개발 및 관광자원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0. 온천지구내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온천지구내 사용료.임대료 등의 조정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 주민보호. 구호. 원호 업무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책 및 사회복지 법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이재민 대책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6.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7.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사. 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11. 부녀. 이동 복지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보육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선도 및 복지등 청소년 대책에 관한 사항
15.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16.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항

제9조(환경과) 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조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통계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6.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8.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9. 민간환경단체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1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2. 대기관련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3. 소음.진동관련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14. 환경신문고 및 환경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15. 수질관련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오수, 분뇨, 축산, 폐수 관련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7. 분뇨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특정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2. 수질 측정망 고시 운영에 관한 사항
23. 하천, 호소, 수질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24.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5.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사항
26. 공원, 유원지, 관광지등 폐기물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27. 폐기물 관련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28. 자연보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9. 자연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30.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31.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32. 도양환경보전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3. 청소인력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3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6. 상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7. 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8.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상수도 대행업소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42. 상수원 및 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3.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4.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5.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6. 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7. 농촌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8.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산과) 농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정책의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3.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4. 양곡의 관리 수급 조절 및 가공등에 관한 사항
5. 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의 증산 및 장려에 관한 사항
7.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8. 영농 기계화 및 농업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10.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
11. 특용 및 원예작물의 증산 장려에 관한 사항
12. 가축의 증식 및 도축장, 가축시장에 관한 사항
13. 수자원 보호 및 수산물 증식 등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산림과)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기본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림 및 육림사업에 관한 사항
3. 양묘사업 및 묘목의 수급 관리, 심사에 관한 사항
4. 임업 부산물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업기술 개량보급 및 산림 재해에 관한 사항
6. 임산물 수급조절 및 부정 임산물에 관한 사항
7.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8.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사항
9. 토석채취.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불 방지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보호수, 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림보호 단속에 관한 사항

14.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단속에 관한 사항
15. 가로 소공원.화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의 이용.보존관리 및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
2. 유도선장 및 도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에 관한 사항
4. 하천 및 도로 적용에 관한 사항
5. 골재채취 허가등에 관한 사항
6. 지하수 개발.이용등에 관한 사항
7. 도로변 휴게소 설치 허가등에 관한 사항
8. 건설부.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10. 도로 및 접도 구역에 관한 사항
11. 가로 지장물에 관한 사항
12. 가로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종합 추진 및 취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14.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개간 허가에 관한 사항
16. 토지 및 농지개량 조사, 측량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17. 풍수해 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건설 조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이용 및 용지 매수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4. 국토 및 자연자원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5.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
7. 공원 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광고물에 관한 사항
10.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1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연료, 전기, 에너지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14. 시장 개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6. 노정업무 및 광공업 등록, 중소기업에 관한 사항
17.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8.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9.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1.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
22.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23. 향토지적 재산권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24. 내고자 상품권 발행 및 관리
25. 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수출진흥 및 수출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다음과 이를 폐지한다.

1.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2. 화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3. 화순군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을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공보를 발행하는 업무담당계장이"를 "공보발행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②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체육청소년계장이"를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③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화순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을 "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⑤ 화순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제1항중 "사업소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을 "직속기관의장, 읍면장"으로 하며,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단서중 "사업소장"을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⑥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군 본청,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군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제14조 제1항중 "기획실장, 내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⑦ 화순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사업소장"은 "직속기관의장"으로 한다.

⑧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중 "교육계장이"를 "장학진흥기금관리 및 운영담당주사가"로 하며,

제22조 제2항중 "기금업무담당계장으로"를 "기금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⑨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업무담당계장이"를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⑩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출납원 :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

⑪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업무담당계장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⑫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가정복지계장"을 "보육업무담당 별정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⑬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를 "간사와 서기는 사회복지과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로 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⑭ 화순군동면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⑮ 화순군농림수산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산업과장"을 "농산과장"으로 하고,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⑯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

⑰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

⑱ 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도시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⑲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소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⑳ 화순군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3조 제4항중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소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㉑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부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